

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41
의결 년월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으로서 일간신문, 시보, 게시판을 사용하되,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공포기준일자를 정함

☐ 주요골자

- 공포방법으로는 시보나,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.
-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로 게재 또는 게시한 날을 공포일자로 함.

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공포방법) ①공포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한다.

②조례, 규칙을 공포할 때는 시보, 일간신문, 게시판 중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공포일 등)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,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. 단,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로 게재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1조내지 제6조(생략)		제1조내지 제6조(현행과 같음)	
제7조(공포방법) 조례, 규칙등은 시보다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 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		제7조(공포방법)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 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 시로써 한다. ② 조례,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시보, 일간 신문, 게시판 중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.	
제8조(공포일등) 조례, 규칙 등은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 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 시된 날로 한다.		제8조(공포일등)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 고,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제된 날로 한다. 단, 두 가지 이상의 공 포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로 게재 또 는 게시된 날로 한다.	
제8조의 2내지 제9조(생략)		제8조의 2내지 제9조(현행과 같음)	

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242
의 결 년 원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□ 제안이유

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민의 수렴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문
위원에게 구정의 전반적인 시책을 자문받아 시책화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임.